

「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일자 2024. . .
제출자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에 근거 법령의 명확화를 통해 조례의 법적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8조 근거 법률(「식품위생법」) 기재

- 당 초:

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.

- 변 경:

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「식품위생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.

「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 중 “행정지도”를 “「식품위생법」”으로 한다.

한다.

2. (생략)

제4조(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)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)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영업제한) ① 시장은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. 다만, 진평음식문화 특화거리(더존마트~롯데마트, 520m)는 예외로 한다.

1. 일반주거지역 : 2

2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) -----

----- 옥외
영업장 시설기준 -----
-----.

제5조(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) -----

- 옥외영업 영업자
준수사항 -----
-----.

제6조(영업제한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식품위생법」 제43조에 따라 -----

옥외영업장 운영을 -----
--. <단서 삭제>

1. (현행 제2호와 같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| | | |
|---|--|---|
| <p>4:00부터 다음날 0 6:00까지</p> | <p>음)</p> | |
| <p>2. 전용주거지역: 2 2:00부터 다음날 0 6:00까지</p> | <p>2. <u>그 외 지역</u> : 24:0 0부터 다음날 06:0 0까지</p> |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|
| <p>② (생략)</p> |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|
| <p><u>제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은 「식품위생법」을 준용한다.</u></p> | <p><u>제8조(행정조치)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의 규 정을 위반하는 옥외 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관련 법 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 를 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제8조(행정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식품위생법」</u> ---- ----- ----- -----.</p> |